

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4. 29.

제7차 개정 2025. 3.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입학전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입학처에서 진행하는 모든 **대학입학전형(편입학 포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 제외)**에 적용한다. (개정 2022.4.20., 2025.3.3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별고사”란 학생선발을 위해 실시하는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
2. “자체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점검·분석·영향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회피”란 본교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이하 “응시생”이라 한다)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을 말한다.
4. “배제”란 대학의 장이 본교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해당 응시생의 선발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5. “학생부종합전형”이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서류평가,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말한다.
6. “입학사정관”이란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7. “입시경비”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의한 입학전형 관련 수입(전형료) 및 지출(각종 수당 및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비, 자료구입비 등)을 말한다.

제2장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제4조(자체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3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0.)
2.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며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3. 제2호의 외부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위촉한다.
4.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입시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공시 마감기한까지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과영역 내 출제 준수 여부
2.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
3.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반영 여부)
5. 영향평가 결과의 공시 기한 준수 여부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내용에 대한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 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의 공시) 자체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10조(운영세칙)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입학전형 회피 및 배제

제11조(대상) ① 입학전형 회피 및 배제 대상 적용 범위는 전형자료 심사, 서류평가, 대학별고사 출제, 면접, 채점, 평가, 감독,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본교 교직원 및 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인, 외부 평가위원 등 외부 인사로 한다. 이 경우, 교직원이라

함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직원, 연구원, 조교 및 기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5.)

② 회피 및 배제의 대상은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회피 대상자 자진신고) ① 입학처장은 회피대상자가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회피 자진신고 안내 공문을 발송해 신고를 유도한다. (개정 2022.4.20.)

② 회피대상자는 자진신고 기간 중에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제13조(배제 대상자 확인) 입학처장은 원서접수 이후 응시생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 검증(연말 정산자료, 인사현황자료, 가족장학사항 등)을 통해 배제 대상자를 확인한다. (개정 2022.4.20.)

제14조(대상자 처리 및 사후 검증) ① 입학처장은 회피 및 배제 대상자가 제17조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모든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단, 제17조 제1호의 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4.20.)

② 입학처장은 회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전형에 참여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제17조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모든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단, 제17조 제1호의 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4.20.)

③ 입학처장은 당해연도의 모든 입학전형 종료 후 최종등록자를 대상으로 회피·배제 결과를 검토하여 전형에 참여한 교직원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

[전문개정 2022.3.31.]

[제목개정 2024.6.5.]

제15조(위반자 처리 등 사후 관리) ① 입학처장은 교직원이 지원자의 합격에 부정하게 기여하거나 또는 제14조 제2항에 의거 위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가 확정된 자는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입학전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외한다. (개정 2022.4.20., 2024.6.5.)

② 회피·배제에 대한 최종 결과는 입학전형 관리의 공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자체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

[제목개정 2024.6.5.]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피 및 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4장 위원회

제1절 기구 및 회의

제17조(기구) 대학입학전형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대학입학전형총괄위원회

2.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3.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4. 대학입학전형사정위원회
5. 삭제 (2022.3.31.)
6. 삭제 (2022.3.31.)
7. 삭제 (2022.3.31.)
8. 삭제 (2022.3.31.)
9. 삭제 (2022.3.31.)
10. 삭제 (2022.3.31.)

제1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결의할 수 있다.

제19조(담당부서) 제17조제1호의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연구처 교무연구팀에서 담당하고, 제17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처 입학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2.4.20.)
[전문개정 2022.3.31.]

제2절 대학입학전형총괄위원회

제20조(설치) 본교의 입학전형계획 등 입학전형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 및 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총괄위원회를 두며, 교무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2.3.31.]

제2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및 각 단과대학의 학장을 포함한 교무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전문가, 전 입학처장 등의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운영) 교무위원회에서 보고 및 조정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총괄위원회에서 보고 및 조정된 것으로 같음한다.
[전문개정 2022.3.31.]

제3절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제23조(설치) 본교의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연구·계획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입학처장(위원장), 교무연구처장, 기획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국제교류처장, 학술정보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각 단과대학별로 1명(단, 예술체육대학은 2명), 외부위원 1명을 입학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3.31., 2022.4.20., 2024.4.5.)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입학(신, 편입학) 전형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신, 편입학) 전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신, 편입학) 전형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사항
4. 대학입학(신, 편입학) 전형 운영, 관리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31.)
5. 입학전형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분과위원회) ① 입학전형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면접고사관리위원회 : 입학전형 중 면접고사와 관련한 업무
2. 실기고사관리위원회 : 입학전형 중 실기고사와 관련한 업무
3. 필기고사관리위원회 : 입학전형 중 필기고사와 관련한 업무
4. 서류평가위원회 : 입학전형 중 **특기자 실적** 등에 대한 서류평가와 관련한 업무 (개정 2025.3.31.)
5.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 : 입학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와 관련한 업무
6. 학생부종합전형재심위원회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점수 격차의 일정 범위 초과로 인한 재평가와 관련한 업무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면접고사관리위원회 : 입학처장(총괄위원장) 및 모집단위 소속 단과대학장(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출제위원, 감수위원, 평가위원 등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2. 실기고사관리위원회 : 입학처장(총괄위원장) 및 모집단위 소속 단과대학장(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출제위원, 감수위원, 평가위원 등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3. 필기고사관리위원회 : 입학처장(총괄위원장) 및 모집단위 소속 단과대학장(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출제위원, 감수위원 등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4. 서류평가위원회 : 입학처장(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평가위원 등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5.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 : 입학처장(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사정관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입학사정관(전임, 교수, 위촉)으로 구성한다.

6. 학생부종합전형재심위원회 : 모집단위 소속 단과대학장(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당연직 포함)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입시전형 종료일(정규학기 시작일 전날)까지로 한다.

④ 규정 제25조의2제2항의 위원장이 회피·배제 대상자인 경우 해촉 및 입학전형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입학처장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촉하거나 입학처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4.5.]

제26조(조사, 연구의 의뢰) 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자문위원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등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단은 고등학교 교장, 교사, 입시전문기관 임직원, 본교 교직원·동문·학생·학부모 또는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세부사항)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4절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제29조(설치) 본교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제31조의 업무를 제외한 대학별고사 관련 업무(문제 출제, 감수, 평가 등 일체) 및 서류평가(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 실적 서류평가 등 일체**) 등 모든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3.31., 2025.3.31.)

② 위원은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둔다. (개정 2022.11.17., 2025.3.31)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재심위원회를 비롯한 별도의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재심위원회는 **교육연구부총장**, 입학처장,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 3인, 입학팀장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2.2.18.,

2022.4.20., 2025.3.31.)

제3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입학전형 부정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전형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3. 응시생의 이의제기를 통한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등 입학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4.20.)
5. 제15조에 따른 위반자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와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위원장은 입학처장의 후속조치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위반사례를 심의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후속조치(경고, 징계요구 등)를 결정한다. (개정 2022.4.20.)

제31조의2(분과위원회 등) ①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1.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 : 학생부종합전형 전 과정의 운영 절차와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총평에 관한 업무
2. 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인단 :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실적전형 등 본교 입학전형 평가과정 참관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업무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 : 입학처장(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위촉사정관 및 전임사정관 등으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2. 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인단 : 본교의 구성원이 아닌 입학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당연직 포함) 및 참관인단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입시전형 종료일(정규학기 시작일 전날)까지로 한다.

④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5.]

제32조(세부사항)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5절 대학입학전형사정위원회

제33조(설치) 본교의 입학전형 사정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사정위원회를 둔다.

제3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총장(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3.31., 2024.4.5.)

②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교육연구부총장**, 교무연구처장, 기획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국제교류처장, 입학처장, 행정지원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2024.4.5., **2025.3.31.**)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입학(신, 편입학) 전형에 대한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2. 수학능력 부족, 부적격자 등 불합격자 처리에 관한 사항

제36조(세부사항)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6절 삭제 (2022.3.31.)

제37조 삭제 (2022.3.31.)

제38조 삭제 (2022.3.31.)

제39조 삭제 (2022.3.31.)

제7절 삭제 (2022.3.31.)

제40조 삭제 (2022.3.31.)

제41조 삭제 (2022.3.31.)

제42조 삭제 (2022.3.31.)

제8절 삭제 (2022.3.31.)

제43조 삭제 (2022.3.31.)

제44조 삭제 (2022.3.31.)

제45조 삭제 (2022.3.31.)

제46조 삭제 (2022.3.31.)

제5장 입학사정관

제47조(구분) ① 입학사정관은 입학처에 두며,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4.20.)

② 전임사정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사정관 : 입학사정관의 자격을 갖추고 입학사정관으로 채용된 자
2. 전환사정관 : 기존 교직원 중에서 입학사정관으로 보직이 변경된 자
3. 교수사정관 : 입학사정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상시적으로 학생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대학이 ‘입학사정관’ 보직을 부여하여 책임시간 감축 및 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교수

③ 위촉사정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위촉사정관 : 조교를 제외한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생선발 기간을 포함해 일정기간 동안 입학사정관으로 위촉된 자
2. 외부위촉사정관 : 대학 외부의 명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학생선발 기간을 포함해 일정기간 동안 입학사정관으로 위촉된 자

제48조(전임사정관의 임용) ① 신규 채용사정관의 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직원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환사정관은 교직원 경력 5년 이상으로 입학관련 부서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49조(위촉사정관의 위촉) ① 내부위촉사정관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외부위촉사정관은 사회 각계각층의 명망있는 자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총장이 정한다.

제50조(업무) 입학사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생선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기준 설계에 관한 사항
2. 자격심사·서류평가·면접고사 등 각종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고교 정보수집·분석 및 전형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선진 입학선발제도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5. 입학상담·홍보·입시지원 등 기타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제51조(비밀엄수) 입학사정관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대학 입학정보 및 비밀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거나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3.31.)

제6장 이의신청

제52조(이의신청) 학생선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3조(처리방법 및 절차)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입학처장은 즉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입학처장은 해당 학생의 모든 전형자료 및 선발과정을 반드시 재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2.4.20.)

③ 입학처장은 사실여부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시 처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부의한다. (개정 2022.4.20.)

제54조(결과통보)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결과가 경미한 경우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할 수 있다.

제7장 입시경비

제55조(전형료책정)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에 의거하여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제56조(경비 집행) 전형료 수입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의거 입학전형 관련 각종 수당 및 경비(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식비, 여비 등)로 집행하며,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고등교육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본교 관련규정(시행지침, 모집요강 등)을 준용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75, 2021.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대학입학전형자문위원회 규정」, 「입학사 정관계운영내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내규」는 폐지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09, 2022.02.18.)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10, 2022.03.31.)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7, 2022.04.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697, 2022.11.17.)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887, 2024.04.05.)

이 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329, 2024.06.05.)

이 규정은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783, 2025.03.31.)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